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호서식] <개정 2021. 1. 18.>

장기요양기관 입소 · 이용신청서 ([●] 신규신청 [□] 갱신 [□] 변경 [□] 해지)

※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,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	처리기간	7일이내	
신청인	성명		김점례	생년월일	1939-0	8-30	
	수급자와의 관계		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	
	주소						
	성명		김점례	주민등록번호		1939-08-30	
	장기요양등급		4등급	장기요양 인정번호		L0011546760	
	주소						
	전화번호(또는 휴대전화번호)						
수급자	입소·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- 기관명 : (수)복지용구의료기3 - 기관기호 : 34615000301 - 기관주소 : 전남 순천시 해룡면 순광로 218 1층 (기관 전화번호: 01022890656, FAX : , 이메일 :)						
	구분 [✔]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[]「의료급여법」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						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제16조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신청인: 김점례 (서명 또는 인)

※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·가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(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, 특별자 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 니다.

수급자(또는 보호자): 김점례 (서명 또는 인)

○○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수급자(또는 보호자):

김점례

(서명 또는 인)

210mm×297mm[백상지(80g/m²) 또는 중질지(80g/m²)]

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								
수급자	성명		김점례		주민등록번호	1939-08-30		
	장기요양등급		4등급		장기요양 인정번호	L0011546760		
	급여종류		복지용구		이용기간	계약시작일 ~ 유효기간종료일		
복지 용구	품목명	제품코드	급여방식			이용희망기관		
			구입	대여	구입일자 (대여기간)	급	장기요양 기관명	장기요양 기관기호
	구강세척기(마우스피스형)	B06121162101	1		2025-10-23	440,000원	(수)복지용구의료기3	34615000301
이용 신청								
내역 - - - - -								
	합계			440,000(원)				



발급변호 : 026102147483648

방험일 : 2024.07 04

장기요양인정서

	9,1-0		
성 명	안광반	생년월일	1940_03,22
장기요양 인정변호	L2227034748 - 101	화기요암동급	2등급
유효기간	2024.08.24 ~ 2027.08.23	창기묘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	2024-08-24-2027-08-23(제가 또는 시설급여)
장기요망동급 판청위원의 의견			

관리지사 물산중부지사 물산중부운염센터	전화 번호 052-241-0250
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(확산동)	善聞 www.longtermcare.or.kr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점



수급자 안내사항

- 1. 수급자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- 2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2함에 따라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 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, "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4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감 경됩니다.
- 3.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하며, 이를 초과하는 비용 및 비급여비용은 본 인이 전액 부당합니다.
- 4. 장기요양보험료를 6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면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5. 장기요망인정 등급판정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동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 에 증명서류를 침투하여 심사정구할 수 있습니다.
- 6.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.
- 7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"가족요양비" 인 경우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에 따라 지급계좌를 특별한금급여수급계좌로 신청 변경 할 수 있습니다.
- 8. 「노인장기요양보합법」제15조제4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기요양인정 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공단은 인정조사를 실시하여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



복지용구 급여확인서

① 수급자 일반사항

수급자성명	안경원	생년월일	1940.03.22	
장기요양등급	2등급	장기요양인정번호	L2227034748 - 101	
유효기간	2024.08.24 ~ 2027.08.23			
연한도액 적용구간	2024.08.24 ~ 2025.08.23, 2025.08.24 ~ 2026.08.23, 2026.08.24 ~ 2027.08.23			

② 복지용구 급여내용

구 분	구입품목	대여품목		
사용이 가능한 복지용구	이동변기,목욕의자,안전손잡이,미끄럼방지용 품,간이변기,지팡이,욕창예방방석,자세변환 용구,욕창예방매트리스,성인용보행기,요실금 팬티,경사로(실내용)	바메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,배회		
사용이 불필요한 복지용구				
발행일 현재 제공받은 복지용구	목욕의자 [ASC-502], 지팡이 [TW-0128], 욕창예방 매트리스 [YH-0302TPU], 수동휠체어 [MIRAGE-7(22D)-B]			

발행일자 : 2024년 07월 04일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

전화번호: 052-241-0250

주 소 : 울산광역시 중구 구교로 41(학산동)

홈페이지 : www.longtermcare.or.kr

유의사항

- 1. 수급자는 연한도액 적용구간 동안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2. 위 품목 중 발행일 현재 타 법령 또는 복지용구로 이미 급여된 품목은 그 사용 가능 햇수동안 같은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 받
- 3. 시설급여(입소기간) 기간 중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되며, 의료기관(병,의원 등)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, 수 통침대, 이동욕조, 목욕리프트의 급여가 제한됩니다.
- 4.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에는 안전손잡이 10개,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,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5개, 간이변기(간이대변기,간이소 변기) 2개, 자세변환용구 5개, 요실금팬티 4개까지 구입이 가능합니다.
- 5.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 변화 등으로 품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공단에 별지 제2호 서식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, 공단이 이를 확인하고 인정한 경우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. 6. 갱신 등 인정신청 결과 신체기능상태 변화로 현재 사용 중인 품목이 사용 불필요한 품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